

『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관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

3. 주요내용

가.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(안 제5조)

나.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9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,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, 제3조, 제37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」은,

- 학습지 교사, 택배, 배달, 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와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-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자리로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.
-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 취약 계층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함에 있어 장소 선정 시 현장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쉼터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